

### [서식 예]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심판 청구서

	행 정 심	판 청	구	> [Subject
청 구 인	이 름	0 0 0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시 ○○구 ○○길 ○○			
선정대표자, 관리인 또는 대리인			변호사 〇 〇〇(우편번호	0 0)
피 청 구 인	_ _ △△지방경침	잘청장	재 결 청	성 경찰청장
청구대상인 처분내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청구인이 20〇〇. 〇. 〇.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자동 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처분 있음을 안 날	2000년 0	월 ○일		
심판청구취지 이유	별지기재와	같음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고지유무	2000년 0	월 ○일 고	1 지 내 용	자동차면허 취소
증거서류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1. 별지기재와 같음)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28조, 동	법시행령 제2	20조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2000년 0월 0일

청 구 인 ○ ○ ○ (인) (또는 대리인 변호사 ○ ○ ○ ⑩)

# △△ 지방경찰청장 귀하

첨부서류	청구서부본	수 수 료	없 음



### 심판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〇〇년 〇월 〇일자 제〇〇〇호 자동차운전면허 (서울 ○종보통, 면허번호: ○○○호)를 취소한다라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 심 판 청 구 이 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〇〇. ○월경 서울에서 자동차운전면허(○종 보통)를 취득하고 그 뒤 계속해서 청구인 소유 자동차를 스스로 운전해 오던 중 20〇〇년 ○월 ○일 ○○시경 ○○시 ○○구 ○○길 ○○번지 앞도로에서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퍼센트)을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 의해 같은 해 ○월 ○일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였고 다음날 취소처분통지를 받았습니다.

#### 2. 피청구인의 처분의 위법 및 부당성

- (1) 청구인은 20○○년 ○월 ○일 ○○시경 친구인 청구외 □□□□집에서 소주1 잔을 마시고 청구인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귀가를 하던 중 경찰관에 의해 음주측정을 당하였습니다.
- (2) 당시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알콜농도가 ○○%로 나타났는데, 음주측정결과는 청구인이 마신 술의 양, 음주후에 경과된 시간, 주취상태 및 음주후 운전 태도, 운전거리 및 음주운정으로 인해 사고가 없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위 수치는 믿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 (3) 한편, 청구인은 운전업에 종사하는 자로 20〇〇년 〇월 〇일 〇〇지역의 어민들이 생산한 생선 등을 매일 〇〇지역까지 운반해 주기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인데, 만일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되지 않는다면, 1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여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받는 것은 변론하고 위 운송계약을 파기하게 되어 막대한 손해배상을 부담해야할 처지에 있습니다.

- (4) 따라서 청구인의 이러한 제반 사정들을 잘 알고 있으면서 단지 음주측정 기계적인 수치만을 믿고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너무 가혹하며 적절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 3.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건 운전 면허취소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구하고자 부득이 이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입 증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자동차운전면허취소통지서

1. 소갑 제2호증

인우보증서

### 첨부서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심판청구서부본

1통

			Sorking Application Applicat	공단	
제출기관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 위원회(행정심판법 23조)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 \$\frac{\text{var}}{\text{var}}\) •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행정심판법 27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청구서 및 부본 각1부	관련법규	행정심판법		
불복방법	<ul> <li>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행정심판법 51조)</li> <li>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단계는 단일화되어 있어 재결에 대한 행정심판 재청구는 할 수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 등의 개별법에서는 다단계의 행정심판을 인정하고 있음</li> <li>재결에 대한 행정소송(행정소송법 19조, 38조)</li> <li>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에는 재결 그 자체에 대한 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li> <li>나다만, 청구인은 기각 재결 등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행정소송법 18조)</li> </ul>				